보도시점 (전매체) 11.23.(목) 14:00

국민과 함께, 골목규제 뽀개기

- 규제뽀개기 4탄,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개최 -

-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골목규제 개선 제안
- 국민판정단 150여명, 역대 최대인원 참여
-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①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가정용 텔레비전(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텔레비전(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되었다.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③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에 앞서 골목규제 애로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영상 속 골목규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옴부즈만지원단	책임자	서기관	여운상 (044-204-7142)
		담당자	사무관	민승주 (044-204-7143)
		담당자	전문위원	윤인주 (044-204-71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규제뽀개기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11.23(목) 14:00 ~ 15:30

○ (장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

* 서울 중구 을지로 7가(DDP 아트홀 內 컨퍼런스홀)

○ (주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골목규제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등 100명

○ (주요내용) ①추적! 골목규제(영상) → ②소상공인 토론규제 건의 → ③국민참여 전문가 토론 → ④국민판정단* 평가

* 온라인 국민판정단(100여명) 및 현장 국민판정단(50명) 찬성/반대 집계

□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15	15′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및 제막행사**	사회자 장관
14:20 ~ 15:20	60′	○ **소상공인 골목규제 핵심과제 토론** * 추적! 골목규제(영상) → 규제개선건의 → 국민참여 전문가 토론 → 국민판정단 평가	
15:20 ~ 15:23	3′	○ **마무리말씀**	장관
15:23 ~ 15:25	2′	○ **참석자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참고 2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진행) 사회자
14:03~14:06 (3′)	장관 인사말씀	
14:06~14:09 (3′)	위원장 축사	
14:09~14:15 (6′)	제막행사 * 장관, 위원장, 국민판정단 대표	
14:15~14:20 (5′)	토론장 준비	
세션1 14:20~14:40 (20′)	(영상) 추적! 골목규제(3′) * 숙박업, 소형헬스장, PC방	※ 진행방식 - 현장의 목소리, 규제로 인한 문제점 제기 - 규제개선 경과 및 소관부처 정책 설명 - 사전에 토론과제를 공유, 현장 참여 국민판정단이 직접 찬/반 의견 자유토론 - 온라인 투표(100명) 및 현장 투표(50명) 결과 집계·발표
	①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추진	
	(문제제기) 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2′)	
	(경과 및 정책 현황) 윤보라 전문위원(2′)	
	< 국민참여 토론 (10′) > (진행) 광운대학교 김주찬 교수	
	국민판정단 현장·온라인 투표 집계 및 발표(3′)	
세션2 14:40~15:00 (20′)	(영상) 추적! 골목규제(3′) * 곰탕집, 독서실, 소상공인 영업소	
	②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문제제기) 한국경제 최형창 기자 (2′)	
	(경과 및 정책 현황) 진영훈 사무관(2′)	
	< 국민참여 토론 (10′) > (진행) 광운대학교 김주찬 교수	
	국민판정단 현장·온라인 투표 집계 및 발표(3′)	
세션3 15:00~15:20 (20′)	(영상) 추적! 골목규제(3′) * 편의점, 미용업소, 수제맥주	
	③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문제제기) 편의점 점주 장동진 (2′)	
	(경과 및 정책 현황) 이주현 사무관(2′)	
	< 국민참여 토론 (10′) > (진행) 광운대학교 김주찬 교수	
	국민판정단 현장·온라인 투표 집계 및 발표(3′)	
15:20~15:23 (3′)	장관 마무리 말씀	(진행) 사회자
15:23~15:25 (2′)	건의서 전달 및 기념 촬영	

참고 3 4차 규제뽀개기 토론과제(안)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추진**	현황 가정용 텔레비전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2,500원) 부과 -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됨(수상기 대수×2,500) *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장치 문제점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가동률이 낮은 경우에도 각 방에 설치된 TV수상기 전부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 * 숙박업소(모텔) 예시 : TV 수상기 30대 보유 시(월 75,000원→연 900,000원 부담) 방안 소상공인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과 체계 개선 - 영세 숙박업의 경우 사업체별로 1대의 수신료만 징수 또는 설치 대수에 따른 수신료 구간제 도입 등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현장의 목소리 ▪ 코로나19, 경기악화 등 숙박업소 피해(관광객 감소 및 예약 취소율 증가로 매출 감소) 발생으로 매출 감소, 경영악화 속에서 TV수신료 경제적 부담
2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현황 식육가공품(곰탕, 소시지 등)을 만들어서 식육과 함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은 26.4㎡ 이상이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0] 9.가.3) 문제점 식육가공품(곰탕, 소시지 등)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제한(26.4㎡ 이상)을 받게 되어 창업하기 어려움 - 동일 업종이여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의 영업장은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이 발생 - 영업장의 위생·안전관리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면적 제한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 가공/판매실 분리, 온도조절장치 설치, 자동화 시설, 자가품질검사 등 방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제한 폐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개정을 통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면적제한 기준 삭제 현장의 목소리 ▪ 양념육, 분쇄 가공육만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은 면적이 26.4㎡ 이하인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하나, 곰탕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가 불가함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3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현행 「약사법」제44조의2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토록 제한 문제점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자로 제한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 발생 - 또한,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 * '23년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결과', 운영시간 미준수율: 5.5% (전년 3.1% 대비 2.4%↑) - 아울러, '공공심야 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시간(22시~01시)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방안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요건' 완화 -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요건'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현장의 목소리 ▪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단순 배탈 및 감기의 경우에도 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도서지역 내 슈퍼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 등록을 하려 했으나.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매등록에 제한을 받음